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2881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5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2881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1. 19 선고 2000나37783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A 담당변호사 황BA 외 5인)

【피고,피상고인】 기CACA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BB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 19. 선고 2000나377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EB산업이라는 상호로 자수제조업을 하는 소외 최DA는 독일에서 전자자수기시설(이하 '이 사건 자수기'라 한다)을 수입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신EA종합기기(이하 '신EA종합기기'라 한다)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신EA종합기기의 신용장개설신청에 따라 1994. 5. 31. 수익자를 독일의 수출업자로 한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으며, 그 당시 최DA는 신EA종합기기의 원고에 대한 신용장 대금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한 사실, 피고는 1994. 7. 28. 최DA와 보증원금 미화 121,000\$, 보증기한 1994. 7. 28.부터 2002. 7. 2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에 편입된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신용보증관계는 피고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기관이 피보증인에게 대출(지급보증 포함)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대출절차상 지급보증의 발생이 대출에 선행하는 경우(무역금융, 차관자금대출 등)에는 그 지급보증일을 대출일로 보며(제1조), '피고의 동의 없이 신용보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을 때(제14조 제5호)' 및 '피고의 동의 없이 보증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존채권의 상환에 충당되었을 때(제14조 제6호)'에는 피고가 면책되는 것으로(제14조 제5호)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994. 7. 28. 최DA와 사이에 외화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미화 121,000\$을 대출하였으며(원금 중 일정액을 2002. 7. 28.까지 분할상환 및 기한의 이익상실 조건 있음,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최DA는 같은 날 위 대출금으로 신EA종합기기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장개설에 따른 무역금융채무를 대체결제한 사실, 그 후 EB산업이 주식회사 EB산업(대표이사 최DA)으로 바뀔에 따라 피고는 1995. 6. 26. 주식회사 EB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신용보증조건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1995. 7. 20. 주식회사 EB산업과 사이에 최D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EB산업은 1999. 1. 28.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나, 그 후에도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신EA종합기기의 이 사건 자수기의 수입대금채무를 지급보증하였고, 그 후 최DA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하고 그 대출금을 신EA종합기기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신용장의 개설 경위 및 최DA는 단지 신EA종합기기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장 개설에 따른 무역금융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원고는 신EA종합기기에 대하여 별다른 권리행사를 함이 없이 바로 최DA에 대한 대출금으로 위 무역금융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최DA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자수기를 수입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신용장개설을 통하여 최DA의 이 사건 자수기 매수대금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신용보증서가 교부되기 전인 1994. 5. 31. 신용장개설 당시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채권·채무관계가 원고와 최DA 사이에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약관 제14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의 보증채무는 이로써 면책되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가 보증서 발급이전에 신용장 개설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이미 성립한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 동의 혹은 사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신용장과 원고와 최DA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